

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

평 창 군 의 회

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. 02.04 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9. 03. 03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9.03.04(수) 제15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가. 「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」에 의거 작성한 태기산풍력발전소 및 강릉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군의회 심의를 거쳐 「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안」을 확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태기산풍력발전소

구 분	당 초	변 경
기본지원사업비	2건 12,571천원	1건 12,571천원
특별지원사업비	2건 606,359천원	13건 606,359천원

- 나. 강릉수력발전소

구 분	당 초	변 경
용자지원사업비	54,826천원	<주민소득증대사업비> 1건 54,826천원

4. 검토결과

○ 본 의회의견 청취안은,
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, 「200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」의 변경 철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득하려는 것으로,
- 본 사업은 동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, 특별지원사업비, 용자지원사업비 등 총 673,756천원으로, 의회의 심의대상인 특별지원사업은 봉평면 진조리, 면온리, 무이리 일원에 마을길포장, 저장고 리모델링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(13개소)에 대하여 606,359천원을 지원하려는 것임.

○ 위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

-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기본지원사업 대상을 보면 소득 증대, 공공시설, 주민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회 변경대상사업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,
- 또한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사전에 주민들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절차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